

학생 회칙

제정 199. 3. 10. 개정 1994. 1. 13.
개정 1998. 7. 24. 개정 2001. 3. 10.
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경대학교 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건학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의 실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효력정지) 본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7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활동
2. 예술, 체육 및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

제 2 장 기 구

제 1 절 학생회

제8조(임원) 본회는 학생회장 1인, 부 학생회장 1인, 각 부서장 1인을 둔다.

제9조(부서)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담당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1. 기획부 : 본회의 제반사업의 기획, 조정에 관한 기타사항을 담당한다.
2. 총무부 : 본회의 활동에 대한 서무, 문서, 회계 및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 홍보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체육활동 및 학내질서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5.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및 친목,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제10조(지위와 업무)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 회장이 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의 각 부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각 부서장에 대해 대표연합회의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부 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부회장은 대표연합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않으며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임 여부에 관한 전체 회원들의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회원의 2/3이상의 지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대표연합회의 불신임 결의는 부결로 한다.

⑤ 각 부서장은 학생회 업무분장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대표연합회

제11조(구성) 대표연합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각 학부/학과학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업무 및 권한) 대표연합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4.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제안건에 대한 심의권
5. 기타 대표연합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권

제13조(회의) ① 대표연합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대표연합회 또는 집행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대표연합회의 소집은 개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결) ① 대표연합회에서 일반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집행위원 및 대표연합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15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본 회의 정·부회장 및 각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업무) 집행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연합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
4. 회칙 개정 발의
5. 중요한 사정으로 대표연합회의 개회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연합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20조(회비)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2조(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책정하되 대표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본 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③ 학생회비의 관리는 학교에서 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발의로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산) ① 본 회의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편성하고 대표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대표연합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

③ 예산안 의결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예산안이 본 회칙이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예산 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24조(집행) ① 승인된 예산의 집행은 본 회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해 지출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부서별로 하고 일체의 경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장부에 그 집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년도 만료 20일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표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감사) 본 회의는 회계년도 말에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표연합회의 심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27조(구성) ① 본 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학부·학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8조(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도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편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7. 본 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관한 사항
8.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장학위원회의 미 구성 시 본 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의 업무를 심의할 수 있다.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선 거

제29조(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 한 자에게 부여하고 휴학 중인 자와 징계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30조(피선거권)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前)학기까지의 전(全)성적이 과목낙제 없 이 평균 B(3.0)학점 이상인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당학기 출석상황이 90%이상인 자
5.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전 까지 교내의 학과, 써클 및 학생회 간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6. 재학기간 중 1회 이상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4년제는 1학년만 입후보 가능) <개정 2013.7.1.>
7. 재입학 및 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자
8. 범죄경력 사실이 없는 자. <신설 2013.11.15.>

제31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② 정·부회장은 연립후보 (러닝메이트)로 한다.

제32조(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2학기 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 에는 그 사유가 해제된 후 최단 시일 내 에 실시한다.

제33조(보궐선거)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되었거나 대표연합회로부터 불신임 결의가 있 을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50일 미만 일 때에는 대표연 합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간접선거) 해당년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년도 학회장 중에서 간접선거를 실시하여 학생회 장을 선출한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6조(선거규약) 선거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37조(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연합회에 의한 발의
2. 집행위원회에 의한 발의
3. 본 회의 회원 과반수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38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고하되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표연합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효력발생) 의결된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일부조항은 시행일을 명시할 수 있다.

제41조(세부사항) 이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